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6. 14.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19년 6월 4일

3. 제정이유

-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발생과 학생 노동인권 침해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다.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 제공(안 제8조)

사.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안 제9조)

아.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검토의견

-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우리 사회의 근로현실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이나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산업재해 위험 등과 같은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파악과 교육적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